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略称) 韓国との漁業協定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昭和四十年十二月十一日

昭和四十年十二月十四日

昭和四十年十二月十八日

東京で署名
国会承認

批准の閣議決定
ソウルで批准書交換

公布及び効力発生の告示
(昭和四十年条約第二六号)
効力発生

目次

前文

次

ページ

第一条 漁業水域の設定	二四七
第二条 共同規制水域の設定	二四七
第三条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実施	二四八
第四条 漁業水域における取締り及び裁判管轄権の行使	二四九
第五条 共同資源調査水域の設定	一五〇
第六条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設置	一五〇
第七条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任務	一五二
第八条 漁船の安全操業、事故の解決	一五三

韓国との漁業協定

ページ

第九条	紛争の解決	一一四
第十条	批准、効力発生及び有効期間	二五五
末文	二五五	二五六
附属書	二五六	二五六
1	最高出漁隻数又は統数	二五六
2	漁業規模	二五七
3	網目	二五八
4	集漁燈の光力	二五八
5	証明書及び標識	二五九
○韓国の漁業水域の直線基線に関する交換公文	二六〇	二六〇
目 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ページ
韓国側書簡	一六〇	一六〇
韓国の漁業水域の直線基線	一六〇	一六〇
日本側書簡	一六二	一六二
○韓国の漁業水域に関する交換公文	二六四	二六四
目 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ページ
韓国側書簡	東京で	二六四

韓國の漁業水域に暫定的に含まれる済州島水域

二六四

日本側書簡

二六六

○合意された議事録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 次

ページ

1 証明書及び標識並びに出漁状況の相互通報	二六八
2 共同規制水域内の年間総漁獲基準量、水揚港、漁獲量の相互通報	二六八
3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関する取締り及び違反	二七〇
4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事務局長の選任	二七一
5 仲裁委員の選定	二七二
6 監視船間の出漁状況の情報提供	二七二
7 沿岸漁業	二七一
8 国内漁業禁止水域等の相互尊重	二七一
9 無害通航	二七四
10 海難救助及び緊急避難	二七五

○標識に関する交換公文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 次

ページ

日本側書簡

二七五

韓国との漁業協定

(四)

標識の様式及び附着場所	二七五
韓国側書簡	二七九
○漁業協力に関する交換公文	一八二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次	ページ
韓国側書簡	一八二
技術及び経済分野における相互協力	一八二
日本側書簡	一八三
○安全操業に関する往復書簡	一八四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次	ページ
日本側書簡	一八四
安全操業のための民間の取決め	一八四
(別紙)	一八五
民間の取決めにもられる項目	一八五
韓国側書簡	一八六

○討議の記録……………一一八八

目 次 ページ

日本側代表の発言……………

一一八八

(a) 出漁隻数又は統数についての行政指導……………

一一八八

(b) 取締りの視察……………

一一八八

(c) 日本の沿岸漁業の実体……………

一一八八

韓国側代表の発言……………

一一八九

(a) 出漁隻数又は統数についての行政指導……………

一一八九

(b) 取締りの視察……………

一一八九

(参考)

○大臣声明……………二九〇

目 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a) 日本国外務大臣の声明……………

二九〇

(b) 韓国外務部長官の声明……………

二九〇

(c) 日本国農林大臣の声明……………

二九〇

(d) 韓國農林部長官の声明……………

二九一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両国が共通の関心を有する水域における漁業資源の

最大の持続的生産性が維持されるべきことを希望し、

前記の資源の保存及びその合理的開発と発展を図ることが両国の利益に役立つことを確信し、

公海自由の原則がこの協定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

を除くほかは尊重されるべきことを確認し、

両国の地理的近接性と両国の漁業の交錯から生ずる

ことのある紛争の原因を除去することが望ましいこと

を認め、

両国の漁業の発展のため相互に協力することを希望

して、

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1 両締約国は、それぞれの締約国が自国の沿岸の基線から測定して十二海里までの水域を自国が漁業に関する排他的管轄権を使用する水域（以下「漁業に関する水域」という。）として設定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相互に認める。ただし、一方の締約国がこの漁業に関する水域の設定に際し直線基線を使用する場合には、その直線基線は、他方の締約国と協議

한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업의 관한 협정

한국과 대한민국,

양국의 공동의 관리를 찾는 수의에서의 어업 사업의

최대의 지속적 성장을 이우기로 어업 법률을 확장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

하여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을 확신하고,

공의 자유의 원칙이 존립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조건과 양국 어업상의 고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의 상황을 제거하는 기이 오망됨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 세국은 각 세국의 자국의 관리의 규정하여
축정하여 12해리 거리의 수역을, 자국의 이법에 관하여
세이정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이하 “이법에 관한 수역”
이라 함)로서 설정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인정한다.
단, 일방 세국이 이 이법에 관할 수역의 설정에 있어
직선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 기준은 아래 세국과

の上決定するものとする。

2 両締約国は、一方の締約国が自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の漁船が漁業に従事することを排除することについて、相互に異議を申し立てな。

3 両締約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が重複する部分については、その部分の最大の幅を示す直線を一等分する点とその重複する部分が終わる一点とをそれぞれ結ぶ直線により一分する。

第二条

両締約国は、次の各線により囲まれる水域（領海及び大陸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を除く。）を共同規制水域として設定する。

- (a) 北緯三十七度三十分以北の東経百一十四度の経線
- (b) 次の各点を順次に結ぶ線
 - (i) 北緯三十七度三十分と東経百一十四度との交点
 - (ii) 北緯三十六度四十五分と東経百一十四度三十分との交点
 - (iii) 北緯三十三度三十分と東経百一十四度三十分との交点
 - (iv) 北緯三十二度三十分と東経百一十六度との交点
 - (v) 北緯三十二度三十分と東経百一十七度との交点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쇄약국은 일반 쇄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특히 쇄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기관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양 쇄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일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누어는 각각을 2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되는 부분이 2점으로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정한다.
 제 2 조
 양 쇄약국은 다음 각항으로 둘의 사이는 수역 (영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 (a) 북위 37도 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 (b) 다음 각 항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 (i)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의 고점
 - (ii) 북위 36도 45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고점
 - (iii) 북위 33도 3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고점
 - (iv) 북위 32도 30분과 동경 126도의 고점
 - (v) 북위 32도 30분과 동경 127도의 고점

- (vi) 北緯三十四度三十四分三十秒と東経百一十九度一分五十秒との交点
(vii) 北緯三十四度四十四分十秒と東経百一十九度八分との交点
(viii) 北緯三十四度五十分と東経百一十九度十四分との交点
(ix) 北緯三十五度三十分と東経百二十一度十 分との交点
(x) 北緯三十七度三十分と東経百三十一度十分との交点
(xi) 牛岩嶺高頂
- 第三条
- 両締約国は、共同規制水域においては、漁業資源の最大の持続的生産性を確保するためには必要とされる保存措置が十分な科学的調査に基づいて実施されるまでの間、底びき網漁業、まき網漁業及び六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さばつり漁業について、この協定の不可分の一部をなす附属書に掲げる暫定的漁業規制措置を実施する。（トーンとは、総トン数によるものとし、船内居住区改善のための許容トン数を差し引いたトン数により表示する。）

第四条

- 1 漁業に関する水域の外側における取締り（停船及

(vii) 북위 34도 34분 30초와 동경 119도 24초의
50초의 고점
(viii) 북위 34도 44분 10초와 동경 119도 08초의
8분 49초 고점
(viii) 북위 34도 50분과 동경 119도 14초의
27초
(vi)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의 고점
(x)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31도 10분의
27초
(xi) 우암봉 고점
제 3 조
^{한국어} 해양국은 공동 구체 수역에서, 어업 자원의 최대의
자유화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보를 출판한
과학적 조사에 회의하여 실시될 대개가지, 계인방 어업.
선방 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그동안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피한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같은방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 (“톤”이라 함은 총 흔수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선내 기초구 개선을 위한 비용 흔수에
한한 흔수에 의하여 표시함)

제 4 조

- 1 어업의 권리 수익의 보호 및 제한 (경계 및

外における
取扱いの規則
及管轄権の判り

び臨検を含む。) 及び裁判管轄権は、漁船の属する
締約国のみが行なし、及び行使する。

乙ずれの締約国も、その国民及び漁船が暫定的漁
業規制措置を誠実に遵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適
切な指導及び監督を行なし、違反に対する適当な罰
則を含む国内措置を実施する。

第五条

共同規制水域の外側に共同資源調査水域が設定され
る。その水域の範囲及びその水域内で行なわれる調査
については、第六条に定める漁業共同委員会が行なう
べき勧告に基づき、両締約国間の協議の上決定される。

第六条

1 両締約国は、この協定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日
韓漁業共同委員会（以下「委員会」とこう。）を設
置し、及び維持する。

2 委員会は、二の国別委員部で構成し、各國別委員
部は、それぞれの締約国の政府が任命する二人の委
員で構成する。
3 委員会のすべての決議、勧告その他の決定は、國
別委員部の間の合意によつてのみ行なうものとする。
委員会は、その會議の運営に関する規則を決定し、

共同資源
調査水域
の設
定
の設
置

日韓漁業
共同資源
の設
置

임금을 포함한) 및 재판 관할권은 예산이 속하는 세속국민이
행이며, 또한 행자한다.
2 어느 세속국도 그 국민 및 예산이 관할의 임금
구제 조치를 상실하게 준수하도록 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관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외관에 대한 경찰관 법칙을
포함하는 국내 조치를 실시한다.

제 5 조

공동 구제 수역의 외측에 공동 차관 조사 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법회 공동 수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 6조에 규정되는 이업 공동 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세속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 6 조

1 양 세속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 한 이업 공동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 개의 국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국별
위원회는 각 세속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의 모든 권리,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

위원회에 의하여 행사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必要があるときは、これを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

5 委員会は、毎年少なくとも一回会合し、また、そのほかに一方の国別委員部の要請により会合することができる。第一回会議の期日及び場所は、両締約国との間の合意で決定する。

6 委員会は、その第一回会議において、議長及び副議長を異なる国別委員部から選定する。議長及び副議長の任期は、一年とする。国別委員部からの議長及び副議長の選定は、各年においてそれぞれの締約国がそれらの地位に順番に代表されるように行なうものとする。

7 委員会の下に、その事務を遂行するため常設の事務局が設置される。

8 委員会の公用語は、日本語及び韓国語とする。提案及び資料は、いずれの公用語によつても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た、必要に応じ、英語によつても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9 委員会がその共同の経費を必要と認めたときは、委員会が勧告し、かつ、両締約国が承認する形式及び割合において両締約国が負担する分担金により、委員会が支払うものとする。

10 委員会は、その共同の経費のための資金の支出を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의하고 또 그 회에 일본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해 회합할 수 있다. 제 회의의 일정은 양 측국과 협의로 결정된다.

6. 위원회는 제 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임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은 매년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은 매년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은 매년 한다.

7. 위원회의 일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동으로 일본어 및 한국어로 한다.
제일 먼저 차트는 어느 공동 언어로 계약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따라 영어로도 계약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결정한 양 측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 측국은 그에 따라 양 측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条

1 委員会は、次の任務を遂行する。

- (a) 兩締約国が共通の関心を有する水域における漁業資源の研究のため行なう科学的調査について、並びにその調査及び研究の結果に基づき執られるべき共同規制水域内における規制措置について兩締約国に勧告する。
- (b) 共同資源調査水域の範囲について兩締約国に勧告する。
- (c) 必要に応じ、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関する事項につき検討し、及びその結果に基づき執られるべき措置（当該規制措置の修正を含む。）について兩締約国に勧告する。
- (d) 兩締約国間の操業の安全及び秩序に関する必要な事項並びに海上における兩締約国の漁船間の事故に対する一般的な取扱方針につき検討し、並びにその結果に基づき執られるべき措置について兩締約国に勧告する。
- (e) 委員会の要請に基づいて兩締約国が提供すべし資料、統計及び記録を編集し、及び研究する。
- (f) この協定の違反に関する同等の刑の細目の制定

제 7 조

1.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a) 양 쪽국이 공동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임업 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 한 그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 구역 수역 안에서의 구역 조치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b) 공동 사업 조사 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임업 규제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검討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구체 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d) 양 쪽국 간의 경영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 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구체 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e) 양 쪽국 어선과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 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f) 위원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e) 양 쪽국의 모임에 의거하여 양 쪽국이 제공한 조언과 자문 및 해당 예산의 양 쪽국 어선과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 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쪽국에 권고한다.

について審議し、及び両締約国に勧告する。

(1) 본 협정의 외반에 관한 통동안 회의 세류.

(2) 每年委員会の事業報告を両締約国に提出する。

(3) そのほか、この協定の実施に伴う技術的な諸問題につき検討し、必要と認めるときは、執られるべき措置について両締約国に勧告する。

委員会は、その任務を遂行するため、必要に応じ、専門家をもつて構成される下部機構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両締約国政府は、1の規定に基づき行なわれた委員会の勧告をできる限り尊重するものとする。

第八条

1 両締約国は、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航行に関する国際慣行を遵守せらるため、両締約国はの漁船間の操業の安全を図り、かつ、その正常な秩序を維持するため、及び海上における両締約国の漁船間の事故の円滑かつ迅速な解決を図るために適切と認める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1 に掲げる目的のため、両締約国の関係当局は、できる限り相互に密接に連絡し、協力するものとする。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 8 조

1 양 쇠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행정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양 쇠약국 어선 관의 조업의 인전을 도모하고 그 경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당 어선의 양 쇠약국 어선 관의 업무하고 신속한 대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장이나 그 인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쇠약국의 관계 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협력하게 노력하고 협력한다.

紛争の解決

第九条

九二

1 この勘定の解釈及び実施に關する兩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なかつた紛争は、いす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中のうちいす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ぬ。

3 いす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づ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채악국 정부는
본장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채악국의 정부가 타방 채악국의 정부로부터 본장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채악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 위원과 이와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 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 3의
중재 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를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
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과의 3인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 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복합니다.
단, 제 3의 중재 위원은 양 채악국 중의 어느 한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채악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의 중재 위원 또는 제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
위원회는 양 채악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 위원과 이를 정부가
협의의 의하여 결정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第十条

1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ぬ。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2 この協定は、五年間効力を存続し、その後は、いかずれか一方の締約国が他方の締約国にこの協定を終了させる意思を通告する日から一年間効力を存続す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一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一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祐

4. 양 측국은 정부는 그의 규정에 의거한 증자 회원회
장에 복합니다.

제 10 조

1 본 협정은 5년간 유효을 가지며, 그 후에는 이노
일방 측국이 다른 측국에 본 협정을 종결 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유효를 가진다.

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을 가지며, 그 후에는 이노
일방 측국이 다른 측국에 본 협정을 종결 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유효를 가진다.

이상의 증자회서. 여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오후 3시에 동동이 정본인 일본어
및 한국어로 본서 2종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李 東 元

金 東 祐

附属書

最高
隻数
又出
漁
統

この協定の第三条に定める暫定的漁業規制措置は、両締約国のそれぞれに適用されるのもとし、その内容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最高出漁隻数又は統数（共同規制水域内における操業のため証明書を所持し、かつ、標識を附着して同時に同水域内に出漁してくる漁船の隻数又は統数の最高限度をさう。）

(a) 五十トン未満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百十五隻

(b) 五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

(i) 十一月一日から翌年の四月三十日までの期間においては二百七十七隻

(ii) 五月一日から十月三十一日までの期間においては百二十隻

(c) まき網漁業については、

(i) 一月十六日から五月十五日までの期間においては六十隻

(ii) 五月十六日から翌年の一月十五日までの期間においては百二十隻

(d) 六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やせつり漁業については十五隻

본 협정 제 3조에 규정된 임시적 어업 규제 조치는 양
국에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 (공동 구역 수의 안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규모를 소지하고 또 규모를 부착하고 동시에
동수의 안에 출어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의 최고
한도를 말함)

(a)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개인적 어업에

대여하는 115척

(b)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개인적 어업에 대여하는

(i)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에는 270척

(ii)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100척

100척

(c) 선망 어업에 대여하는

(i)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60통
(ii) 5월 16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에는 120통

(d)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그동안 낚시 어업에
대여하는 15隻

ただし、操業期間は六月一日から十一月三十一

日までとし、操業区域は大韓民国の慶尚北道と慶尚南道との境界線と海岸線との交点と北緯三十五度三十分と東経百三十度との交点とを結ぶ直線以南（ただし、濟州島の西側においては北緯三十三度三十分以南）の水域とする。

(e) 日本国の漁船と大韓民国の漁船との漁獲能力の格差がある間、大韓民国の出漁隻数又は統計は、両締約国政府間の協議により、この協定の最高出漁隻数又は統計を基準とし、その格差を考慮して調整される。

漁船規模

2

漁船規模

(a) 底びき網漁業のうち

(i) トロール漁業以外のものについては三十一メートル以上百七十トン以下

(ii) トロール漁業については四トン以上五百五十トン以下

ただし、五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

業（大韓民国が日本海において認めてくる六十トン未満の漁船によるえび底びき網漁業を除く。）は、東経百二十八度以東の水域においては、行なわざこととする。

단. 29 개정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업 구역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상선과 해안선의 조경과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의 조경을 경계하는 경선 이남 (단. 제주도의 서쪽에 있어서는 북위 33도 30분 이남)의 수역으로 한다.

(e) 일본국 어선과 대한민국 어선의 어획

농부에 권리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출어 척수 또는 통수는 양 계약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본 협정의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어선 규제

(a) 개인적 어업 허가증에서

(i) 토록 어업 이익의 1/2에 대하여는 30톤 이상 170톤 이하

(ii) 토록 어업에 대하여는 100톤 이상 550톤 이하

단. 5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한 개인적 어업 (대한민국이 종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세수 치관적 어업을 제외함)은 통과 1280 톤동의 수역에서는

행위하지 아니한다.

網

目

- (b) まき網漁業については網船四十メートル以上百メートル以下

ただし、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日本国に現存する百メートル以上のまき網網船一隻は、当分の間例外として認められる。

- (c) 六十メートル以上の漁船によればつら漁業については百メートル以下

- 3 網目（海中における内径と/or）

- (a) 五十メートル未満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三十三ミリメートル以上

- (b) 五十メートル以上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五十四ミリメートル以上

- (c) まき網漁業のあじ又はさばを対象とする漁網の身網の主要部分については三十ミリメートル以上

- 4 集魚燈の光力（発電機の総設備容量）

- (a) まき網漁業については一統につき、十キロワット以下の灯船二隻及び七・五キロワット以下の灯

- 船一隻とし、計二十七・五キロワット以下

- (b) 六十メートル以上の漁船によるやばつり漁業については十キロワット以下

- (b) 선방 어업에 대비하는 빙전 40톤 이상 100톤 이하

단, 본 협정 서명일에 일본국에 현존하는 100톤 이상의 선방 방선 1隻은 당분간 예외로 인정된다.

- (c) 60톤 이상의 어선에 외한 고동어 낚시 어업에 대비하는 100톤 이하

- 3 땅목 (해중 어업의 내포으로 함)

- (a) 50톤 미만의 어선에 외한 천연광 어업에 대비하는 33밀리미터 이하

- (b) 50톤 이상의 어선에 외한 천연광 어업에 대비하는 54밀리미터 이상

- (c) 선방 어업증 관제이 또는 고동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선방의 주요 부문에 대비하는 30밀리미터 이상

- 4 집어등의 품격 (발전기의 총 설비 용량)

- (a) 선방 어업에 대비하는 16~30 10kw으로

- 이어의 동선 2척 및 7.5kw로 하도 이어의 동선 1척으로 야고, 합계 27.5kw로 하도 이어

- (b) 60톤 이상의 어선에 외한 고동어 낚시 어업에 대비하는 10kw로 하도 이어

証明書及び標識

(a) 共同規制水域内に出漁する漁船は、それぞれの政府が発給する証明書を所持し、かつ、標識を附着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まき網漁業に従事する漁船については、網船以外の漁船は証明書を所持する必要なく、また、網船は正の標識を、網船以外の漁船は正の標識に符合する副の標識をそれぞれ附着するものとする。

(b) 証明書及び標識の総数（底びき網漁業及びやばつり漁業に従事する漁船については各漁船に附着される二枚の標識を一として計算し、まき網漁業に従事する漁船については網船に附着される一枚の正の標識を一として計算する。）は、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対象となる漁業別に当該漁業に関する最高出漁隻数及び統数とする。ただし、漁業の実態にかんがみ、五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その最高出漁隻数の十五パーセントまで、五十トン未満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その最高出漁隻数の二十一パーセントまで、それぞれ増加発給することができます。

(c) 標識の様式及び附着場所は、両締約国政府間の協議により定められる。

5. 構成部

(1) 공동 국제 수역 안에 출어하는 어선은 그 경비부 담금부 또는 경비를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선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민간 이외의 어선은 경비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민간은 경

표지, 민간 이외의 어선은 경 표지에 부임하는 부 표지를 가리 부착하여야 한다.

(2) 경찰 및 표지의 총수 (개인 및 어업 및 그동안 낸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각 어선에 부착되는 2매의 표지를 하나로 계산하고, 선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2매의 표지를 하나로 계산함)는 경찰 어업 국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어업별로

단체 어업에 관계하고 있어 출수 및 품수와 동수로 한다. 단, 어업의 실체에 비하여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개인 및

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15퍼센트까지,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개인 및 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20퍼센트까지 추가 증가 범위 할 수 있다.

(3) 표지의 양식 및 부착 장소는 양 제작국 정부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韓國側書

韓國の漁業水域の直線基線に関する
交換公文

(訳文)

(韓国側書)

1965年 6月 22日

서울특별시

부록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言及し、大韓民国政府が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の設定に関して次の直線基線を決定する意向であることを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1) 長鬚岬及び達萬岬のそれぞれの尖端を結ぶ直線

による湾口の閉鎖線

(2) 花岩湫及び凡月岬のそれぞれの尖端を結ぶ直線

による湾口の閉鎖線

(3) 一・五メートル岩、生島、鴻島、于汝岩、上白

島及び巨文島のそれぞれの南端を順次結ぶ直線

(4) 小鈴島、西格列飛島、於青島、稷島、上旺嶺島

及び横島(鞍馬群島)のそれぞれの西端を順次結ぶ直線

本長官は、閣下が前記の直線基線の決定について日本国政府として異議がなじことを日本国政府に代わって確認されれば、大韓民国政府は、この問題についての日本国政府との協議が終了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を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본 장관은 주어가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의 첫 번째 기선의

설정에 반대여 일본국 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대한 민국

수령의 첫 번째에 관하여 다음의 직선 기선을 결정할 의향임을 인정하는 양장을 가집니다.

(1) 장기곶 및 단단곶의 구간의 둘 끝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2) 화암주 및 범월암의 구간의 둘 끝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3) 1.5미터암, 신도, 흥도, 간식암, 삼백도 및 거문도의

구간의 남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4) 소영도, 서구암비도, 어령도, 칙도, 상황동도 및 흥도

(한국군도)의 구간의 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본 장관은 주어가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의 첫 번째 기선의 설정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대한 민국 수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와의 협의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인정하는 양장을 가집니다.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とに重ねて
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外務部長官 李東元

日本国外務大臣 植名悦三郎閣下

한국에게 세우는 우호의 정신을 기원합니다.
서인나에 대한 사랑으로

0
1965.6.22
李東元
外務部長官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付け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言及し、大韓民国政府が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の設定に関して次の直線基線を決定する意向であることを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1) 長鬚岬及び達萬岬のそれぞれの尖端を結ぶ直線による湾口の閉鎖線

(2) 花岩湫及び凡月岬のそれぞれの尖端を結ぶ直線による湾口の閉鎖線

(3) 一・五メートル岩、生島、鴻島、于汝岩、上白島及び巨文島のそれぞれの南端を順次結ぶ直線

(4) 小鉈島、西格列飛島、於青島、稷島、上旺燈島及び横島（鞍馬群島）のそれぞれの西端を順次結ぶ直線

本長官は、閣下が前記の直線基線の決定について日本国政府として異議がないこと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れば、大韓民国政府は、この問題についての日本国政府との協議が終了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を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本大臣は、大韓民国政府が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
水域の設定に関して前記の直線水線を決定されること
について日本国政府として異議がないことを申し述べ
る光榮を有し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
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一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日本国外務大臣 植名悦三郎

大韓国外務部長官 李東元閣下

(韓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に関する交換公文)

(訳文)

韓國側
韓國
韓国水域能域の漁業
州定島れに水るに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言及し、両国政府の代表の間で到達された次の了解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暫定的措置として、大韓民国が設定する漁業に関する水域を画する線と次のそれぞれの線とにより囲まれる水域は、当分の間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に含まれることとする。

(1) 北緯三十三度四十八分十五秒と東経百二十七度二十一分との交点、北緯三十三度四十七分三十秒と東経百二十七度十三分との交点及び牛島の真東十二海里の点を順次結ぶ直線

(2) 北緯三十三度五十六分二十五秒と東経百二十九度五十五分三十秒との交点と北緯三十三度二十四分二十秒と東経百二十五度五十六分二十秒との交点を結ぶ直線

前記の了解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受領したときは、大韓民国政府は、この書簡及び閣下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します。

본래는 대한 민국 정부는 본 서면과 구약의 회동이 장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대로 밝힌다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주를 것임입니다.

구약에게 서토이 본래의 본래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 6월 22일
토요코로 이사

부록

본래는 금일 서명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 하여, 양국 정부 대표에게 도달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하는 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
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外務部長官 李東元

日本国外務大臣 植名悦三郎閣下

한국 외무부 장관
한일 어업 협정에
관한 통지

1965.6.22
이동원
장관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付け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言及し、両国政府の代表の間で到達された次の了解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暫定的措置として、大韓民国が設定する漁業に関する水域を画する線と次のそれぞれの線により囲まれる水域は、当分の間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に含まれることとする。

- (1) 北緯三十三度四十八分十五秒と東経百二十七度二十一分との交点、北緯三十三度四十七分三十秒と東経百二十七度十三分との交点及び牛島の真東十二海里の点を順次結ぶ直線
- (2) 北緯三十三度五十六分二十五秒と東経百二十五度五十五分三十秒との交点と北緯三十三度二十四分二十秒と東経百二十五度五十六分二十秒との交点を結ぶ直線

前記の了解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受領したときは、大韓民国政府は、この書簡及び閣下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なします。

本大臣は、前記の了解が日本国政府の了解でもあること並びに日本国政府が閣下の書簡及びこの返簡を前記の勘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す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日本国外務大臣 椎名悦三郎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東元閣下